

노인인권 보호지침

노인인권이란

노후에도

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

노인이라는 이유로

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

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,
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
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,
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
안 되는 것

(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)



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

시설운영자, 종사자, 동료생활노인,
가족,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
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
'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'에 포함된
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,
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
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.

-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
-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-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-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
-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-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
-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-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-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노인학대의 개념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.
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·정신적·성적·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 조치 제공하지 않는 방임,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. (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)

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

- 신체적 학대**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- 정서적 학대**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·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- 성 적 학대**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- 경제적 학대**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- 방 임**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- 유 기** 보호자로서 책임·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
노인학대 신고

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(24시간)
1577-1389 또는 110번으로 전화
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·
서신·온라인 등을 이용

신고내용은 학대피해 어르신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,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어르신의 학대상황, 위급성에 대해 설명
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)